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가단5172822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기창, 성승용

피고1. B

2. C

변론 종결2024. 11. 28.

판결 선고2024. 12. 19.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3,572,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92. 5. 19. 접수 제1200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부분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한 부분

1) 갑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C은, 자신이 피고 B로부터 받을 물품대금 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받은 것인데 농지법상 규정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근저당권설정을 하여 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김홍도

별지